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전 문 직 공 무 원 인 사 규 정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(인사혁신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현재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‘근무연수평정’의 비중을 축소하고 ‘성과계약등 평가’ 비중을 확대하여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보상하는 합리적 평가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근무연수평정 비중 축소 및 성과계약등 평가 비중 확대(안 제17조제 3항 제1호 및 제2호)
- 현재는 근무연수평정 누적점수가 20점 이상이고 성과계약등 평가 누적점수가 80점 이상일 때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대상이 되나,
 - 향후 근무연수평정 누적점수가 10점 이상이고 성과계약등 평가 누적점수가 90점 이상일 때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대상이 되도록 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

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3항제1호 중 “80점”을 “90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20점”을 “10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기준이 되는 성과계약 등 평가 및 근무
연수평정의 누적점수에 관한 경과조치) 2023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
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와 2023년 7월 30일 이전에 공무원
성과평가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시평정을 실시하는 경
우에는 제17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7조(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) ①·② (생략)	제17조(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임용권자는 1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전문관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등급별 누적점수가 <u>80점</u> 이상일 것	1. ----- ----- <u>90점</u> -----
2. 제2항에 따른 근무연수평정의 누적점수가 <u>20점</u> 이상일 것	2. ----- ----- <u>10점</u> ----- --
④·⑤ (생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	
연락처	(044) 201 - 8297